

기부금 조정명세서

과세기간	년 년	월 월	일부터 일까지	상 호	성 명
	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

① 기준소득금액		⑤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[④, ②⑥]	
② 「소득세법」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		⑥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[(④-⑤)>0, ③]	
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·제76조 및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		⑦ 한도초과액[(③-⑥)>0]	
④ 한도액 [(①-②)>0]		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[(①-②-⑤-⑥)>0]	

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

⑨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		⑫ 소득금액 차감잔액 [(⑧-⑪)>0]	
⑩ 한도액 (⑧×30%)		⑬ 한도초과액[(⑨-⑩)>0]	
⑪ 필요경비 산입액 MIN(⑨, ⑩)			

3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

⑭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기부금 해당 금액		⑮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[⑮, ②⑥]	
⑮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해당 금액		⑰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[(⑮-⑮)>0, ⑮]	
⑯ 기부금 해당 금액 (⑭+⑮)		⑱ 한도초과액[(⑯-⑰)>0]	
⑰ 기부금 한도액(㉠또는㉡) 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[⑱×10% +(⑱×20%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)] ㉡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(⑱×30%)			

4.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

⑲ 기부금 합계액(③+⑨+⑯)	⑳ 필요경비 산입 합계 (⑥+⑪+⑰)	㉑ 한도초과액 합계(⑲-㉒)=(⑦+⑬+⑱)

5. 기부금 이월액 명세

기부금 코드	기부연도	㉔ 기부금액	㉕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	㉖ 공제대상 금액 (㉔-㉕)	㉗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	㉘ 다음 과세기간 이월액(㉖-㉗)
합 계						

작성 방법

- ①기준소득금액은 「소득세법」 제34조에 따른 기부금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·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.
 - ③, ⑨, ⑭, ⑮ 란: "기부금명세서(별지 제45호서식)"의 '3.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'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 - ④한도액란: " $(\text{㉔}-\text{㉕}) > 0$ "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, 그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으로 적습니다. 이하에서 $(\text{㉔}-\text{㉕}) > 0$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.
 - ⑤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: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5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되는 금액을 적되,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㉗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 - ⑥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란: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, 그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으로 적습니다.
 - ⑦한도초과액란: ③금액에서 ⑥금액을 빼서 적되, 그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으로 적습니다.
- ※ 3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-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: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, 그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으로 적습니다.
 - "5. 기부금 이월액 명세"는 ⑤, ⑮란에 적어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 이월액을 과세기간별·기부금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